

인지세 환급(공제)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
------	-----	--

1. 신청인 인적사항

① 상호(법인명)	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
③ 성명(대표자)	④ 현금납부 승인번호

⑤ 사업장 소재지(주소지)

2. 신청 사항

과세문서 구분	과세 문서명	통당 세액	과오납한 과세문서 통수	환급(공제) 신청세액	인지첨부· 소인일 또는 현금납부일	환급(공제) 신청사유
합계						

국세환급금계좌신고	거래은행	은행	지점	계좌번호	
-----------	------	----	----	------	--

위와 같이 「인지세법」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·소인하거나 현금납부를 할 때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(공제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아래의 해당 서류 ☐ 수입인지가 첨부·소인된 경우: 해당 과세문서 원본(복본, 사본) ☐ 현금으로 선납한 경우: 해당 과세문서 원본(복본, 사본) ☐ 그 밖의 경우: 과오납 증명서류 ☐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: 계좌개설신고서, 통장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제1호의 ①, ③, ⑤ : 신청인의 상호(법인명)·성명(대표자)·사업장 소재지(주소지)를 적습니다.
제1호의 ②: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,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제1호의 ④: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한 현금납부 승인번호를 적습니다.
제2호의 과세문서구분란: 「인지세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적습니다.
(예: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의 경우에는 "제7호가목"으로 적습니다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